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24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김원이
문대림 · 임미애 · 허영
박용갑 · 朴芝源 · 문금주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을 통해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고 임차료·어구구입비·어업교육을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면서 청년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업 방식은 민간 간 어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어선 임대차의 금지 특약으로 인해 임대용 어선 확보의 어려움 있고, 사업 지침상 담보대출이 없는 어선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선어업 수요와 어선 공급의 매칭 및 임대 규모 확대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어선·어업 등의 내용을 규정한 「수산업법」에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하여 보유·관리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 매입·임대 방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청년 어업인에게는 어선어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어업인에게는 어선 매각을 통한 연금형 은퇴 수단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어선매입임대사업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전과 어촌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선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어선매입임대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매입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로 본다.

④ 사업수행기관이 어선매입임대사업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임대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새로운 어업허

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어선의 매입기준, 임대 대상자의 선정기준, 매입·임대의 방법 및 절차 등 어선매입임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0조의2(어선매입임대사업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과 어촌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선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어선매입임대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u>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매입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③ 사업수행기관은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같은 조 제1항부터</u>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로 본다.

④ 사업수행기관이 어선매입임대사업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임대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어선의 매입기준, 임대 대상자의 선정기준, 매입·임대의 방법 및 절차 등 어선매입임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